

• 소통의 연수 • 통합의 연수 • 안전한 연수



연수구보



발행·편집인:연수구청장 / 발행처:인천광역시 연수구 / 주소: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우)21967 ☎ 749-7392 / FAX 749-7399

구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부록 제1337호 2022. 10. 24.(월)

【규 칙】

- 인천광역시 연수구 규칙 제762호(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 1

【공 고】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22-1540호(인천광역시 연수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21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22-1549호(주식 매각 공개) 34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22-1550호(인천광역시 연수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35

회							
람							

인천광역시 연수구 규칙(공포)

제 명	주 요 내 용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	1. 제안이유 ○ ‘22. 5. 19.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라 해당 법령과 중복되는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공무원 행동강령」,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지침」에서 삭제하는 등의 관계법령 개정이 이루어짐. ○ 이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유사·중복되는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이해충돌방지 제도를 일원화하고, 관련 규정 삭제에 따라 모호해진 용어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과 내용이 중첩되는 이해충돌방지 관련 규정 및 서식 삭제(제5조 ~ 제10조, 제19조, 제24조 삭제, 별지 제3호 ~ 제9호서식, 제17호서식 삭제) ○ 이해충돌방지 관련 규정 삭제에 따른 용어 정비 및 개념 명확화 ○ 띄어쓰기 및 용어 정비(제2조제1호바목 및 아목, 제15조, 제17조 등)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이 재 호

2022. 10. 24.

인천광역시 연수구 규칙 제 762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바목 중 “구”를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로 하고, 같은 호 아목 중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를 “구”로 한다.

제5조부터 제10조까지와 제1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5조 중 “타인”을 “다른 사람”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타인”을 각각 “다른 사람”으로 한다.

제20조의2제3호 중 “전가”를 “전가(轉嫁)”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을 “제4호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로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가.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기관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

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직유관단체

제21조제3항제1호 중 “소속 공무원” 을 “공무원” 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금품 등” 을 “금품등” 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본문 중 “서면” 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로 한다.

제24조를 삭제한다.

제28조제2항 중 “금품 등” 을 각각 “금품등” 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제5조, 제6조, 제10조, 제29조” 를 “제29조” 로 한다.

제32조제2항 중 “구 소속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 을 “공무원에 대한” 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9호서식까지와 별지 제17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반행위에 대한 징계 등 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5조부터 제10조까지와 제19조, 제24조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28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가. ~ 마. (생 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u>군</u> 를 상대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바. <u>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u> ----- -----
사. (생 략)	사. (현행과 같음)
아. 그 밖에 <u>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u> 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법인·단체	아. ----- <u>군</u> ----- ----- ----- ----- ----- -----
2. ~ 3. (생 략)	2. ~ 3. (현행과 같음)
제5조(사적이해관계의 신고 등) 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해당 사실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정하는 단순 민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삭 제>

지 아니하다.

1. 공무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2. 공무원의 4촌 이내의 친족(「민법」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공무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4. 공무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5. 공무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해당 대리·고문·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6.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단체(이하 “특수관계사업자”라 한다)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단, 주식·지분, 자본금의

소유는 소유 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하고,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소유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가.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주식 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나.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지분 총수가 출자지분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다. 공직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7.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전거래가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8. 소속 기관의 퇴직공무원으로서 퇴직 전 5년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9. 학연, 지연, 종교, 직연(職緣)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10. 최근 2년 이내에 인·허가, 계약의 체결, 정책·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자 중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11. 그 밖에 구청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정한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② 직무관련자 또는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공무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사유를 소명하여 서면으로 제5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항에 따른 직무재배치 등 조치 신청의 대상이 된 공무원에게서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고, 해당 공무원
원은 지체 없이 그에 대한 의견서
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그 사
유를 소명한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 제1항
및 각 호 외의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행동강
령책임관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제5항 각 호의 조
치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나 제2
항 및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
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
게 보고해야 하며 구청장은 해당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직무 참여의 일시중지
2.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
행자의 지정
3. 직무 재배정
4. 전보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행동강령책임관
에게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확
인·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대
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

2. 국가의 안전보장 및 경제발전
등 공익 증진을 이유로 직무수행
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⑦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 본문
에 따른 신고,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신청, 제5항에 따른 조치 및
제6항 후단에 따른 확인·점검에
관한 현황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
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고위공직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삭 제>

동 내역 제출) ① 고위공직자(「공무
원 행동강령」제5조의2제1항에 따
른 고위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
다)는 그 직위에 임용된 날 또는 임
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의 민간 분
야 업무활동 내역(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 3년간의 내역을 말한다)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행
동강령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민간 분야 업무활동

동 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직하였던 법인·단체와 그 업무 내용

2. 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3.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① <삭 제>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방공무원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2.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쟁송 등의 당사자가 되는 직무이거나 소속된 기관에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인 경우에 소속 기관이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에게 조언·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외국의 정부·기관·법인·단체를

대리하는 행위. 다만, 소속 기관의 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다만, 소속 기관의 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구청장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직무 관련 행위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행위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중지하거나 종료하도록 해당 공무원에게 명하여야 한다.

제8조(가족 채용 제한) ① 고위공직자는 자 <삭 제>

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 기관이나 산하기관(「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인사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③ 산하기관을 지휘·감독·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자신의 가족이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산하기관에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① 고위공 <삭 제>

직자는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 기관이나 산하기관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관계 사업자가 고위공직자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 기관이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 그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산하기관을 지휘·감독·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 그 산하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 ① <삭 제>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인 소속 기관
의 퇴직자(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
나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
는 사적 접촉을 하는 경우 행동강
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
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
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1.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골프를
함께하는 행위
2.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여행을
함께하는 행위
3.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사행성
오락을 함께하는 행위
4. 직무관련자인 퇴직자가 비용을
부담하는(퇴직자가 재직하고 있
는 법인·단체, 후원자 등이 비
용을 부담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식사·음주 등의 향응을 함께 하
는 행위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사전에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접촉을 마친 날부터 5일 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5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공무원
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
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① (생
략)

②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
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아
니 된다.

③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
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
한을 행사하거나 지위· 직책 등에
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
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
선· 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1. ~ 9. (생략)

제19조(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공무원은 관용 차량·선박·항
공기·청사·관사·건설중기 등 공용물

제15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

----- 다른 사람-----
-----.

제17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① (현
행과 같음)

② -----
----- 다른 사람-----

-----.

③ ----- 다른 사람-----

-----.

1. ~ 9. (현행과 같음)

<삭 제>

과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
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
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의2(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
당 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 2. (생략)

3.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
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
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
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
하는 행위

제20조의2(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
당 행위의 금지) -----

-----.

1. ~ 2. (현행과 같음)

3. -----

----- 전가(轉嫁)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기관 또는 단체에 공무원 자신
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
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
용·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가.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

	<u>속기관</u> 나. 「<u>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u>」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 다. 「<u>공직자윤리법</u>」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직유관단체
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u>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u>	5. -----, ----- -----, <u>제4호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u>----- ----- ----- -----
제21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 ② (생략) ③ (생략) 1. 구청장이 <u>소속 공무원이나 파견 공무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u> 2. ~ 8. (생략)	제21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1. ----- <u>공무원</u>----- ----- ----- ----- 2. ~ 8. (현행과 같음)
제23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생략)	제23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공무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⑩ (생략)

제24조(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① 공

무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공무원 자신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과 직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1.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는 제외

② -----

-----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 -----
-----.

③ ~ ⑩ (현행과 같음)

<삭 제>

한다.

2. 부동산,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산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공매·경매·입찰 및 공개추첨(이하 “공매등”이라 한다)을 통한 거래행위는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거래 행위 외에 물품(일상생활용품은 제외한다), 용역,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만, 공매등을 통한 계약 체결 행위 또는 거래관행상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계약 체결 행위는 제외한다.

② 공무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공무원 자신의 직무관련자이었던 자이거나 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 사람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과 관련된 직무 수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 또는

직무관련자였던 사람이 「민법」 제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 등의 행위를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 자신의 거래 등의 행위가 아니거나 제3자가 중개 또는 대리하여 거래한 경우로서 미리 이를 알고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래 등의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신고한 행위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구청장은 해당 공무원에게 제5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제28조(징계 등)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금품 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 2의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에 따라서 처리하되,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직자 행동강령

제28조(징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금품등 -----

-----, -----

운영지침」 별표 4의 금품 등 수수
(授受) 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30조(기록·보관·관리) ① 행동강령
책임관은 제5조, 제6조, 제10조, 제
29조 등과 관련하여 제출된 사항,
확인 사항 및 조치 내역 등을 관리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록의
보존기간에 관하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를
준용한다.

② (생략)

제32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
(생략)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구 소속 공무
원에 대한 공무원 행동강령의 교
육·상담, 이 규칙의 준수 여부에 대
한 점검 및 위반행위의 신고접수,
조사처리, 그 밖에 행동강령 운영
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 ~ ④ (생략)

----- 금품등 -----

-----.

제30조(기록·보관·관리) ① -----
----- 제29조 -----
-----, -----
-----.

--.

② (현행과 같음)

제32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
(현행과 같음)

② ----- 공무원에 대한
-----, -----

-----, -----, -----

-----.

③ ~ ④ (현행과 같음)

「인천광역시 연수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연수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10월 19일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1. 자치법규명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 고향사랑 기부금의 원활한 시행 및 운영을 위해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목적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 운영 등(안 제2조 ~ 제6조)
- 지정금융기관의 위탁(안 제7조)
- 고향사랑기금의 설치·운용(안 제8조 ~ 제11조, 제22조 ~ 제23조)
- 고향사랑기금의 설치·운용(안 제12조 ~ 제21조)
-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을 위한 사항(안 부칙 제1조~제5조)

4.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 10. 26.(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의견 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기타사항

이 조례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은 연수구청 자치행정과 (☎749-72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출서식

제 정 (안)	사 유(구체적으로)
	(필요시 관련 근거자료 첨부)

마. 보내실 곳

-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2층 자치행정과
- 연 락 처 : (전화) 749-7233, (FAX) 749-7219
- E-mail : silver332@korea.kr
- 홈페이지 : <http://www.yeonsu.go.kr/>

바. 첨부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붙임〉 제정(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인천광역시 연수구 답례품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답례품 품목 선정에 관한 사항
2. 답례품 공급업체 공모 심사에 관한 사항
3. 답례품의 안정적인 제공을 위한 자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답례품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선정위원회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위촉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고향사랑 기부 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지역의 특산품 선정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1명

4. 지역의 생산 또는 제조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5. 상품·유통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

6. 그 밖에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제2항에 따라 선정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선정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제19조 및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장”은 “선정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심의위원회의 위원”을 “선정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제3조(답례품의 종류) ① 구청장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라 답례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생산·채취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및 임산물 등의 지역특산품과 구에 생산 기반을 둔 업체가 생산·제조한 물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 제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답례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구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체험, 숙박, 관광, 서비스 상품 등을 포함한 고향사랑 상품권을 발행하여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답례품을 선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등을 선정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유기농수산물, 무농약농산물, 무항생제수산물 등) 및 유기식품 등
2. 「축산법」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
3.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을 받은 축산물
4.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통주
5.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한 농산물
6.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지리적표시 등록품
7.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사업자가 생산한 물품
8. 구에서 인증한 품목 또는 공동브랜드 사용 품목
9. 농수산가공품 등 제조품일 경우 관할구역 안에서 생산되는 원재료의 사용 비율이 50% 이상인 품목
10. 구의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 기업 및 장애인 단체가 생산한 물품
11.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전승 공예품
12. 관광·공연 입장권 및 지역사랑 상품권 등 구 관할구역 내에서만 통용되는 유가증권

1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선정·운영하는
각종 서비스의 상품

제4조(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사항) 구청장은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답례품의 안정적 공급 가능 여부
2. 답례품의 보관·상품화·품질관리·배송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
등 업무수행 능력
3. 해당 관할구역 안에 생산·제조 기반의 보유 여부
4. 최근 3년간 생산·공급 실적 및 매출액
5. 답례품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 능력
6. 그 밖에 답례품 및 그 공급업체 선정 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사항

제5조(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① 구청장은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공급업
체를 공모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급업체를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포함한 공고문을 공모 접수시작일 14일 전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1. 선정위원회에서 정한 답례품의 품목 등
2.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답례품의 종류 및 선정 시 고려사항
3.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을 위한 평가 항목 등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모 결과를 공고한다.

제6조(답례품비의 지급) 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비는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지정 금융기관의 위탁) 구청장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정 금융기관에 위탁한다.

1.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접수
2.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확인
3.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의 확인
4.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방법 등의 안내
5.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영수증의 발급

제8조(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재원)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모금·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
2. 일반회계 전입금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제9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정한 금고에 예치·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제10조(기금의 사용 목적)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기금을 관리
· 운용할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지정하여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영 제3조에 따라 지정
한 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11조제3항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홍보비, 인쇄비, 운영경비 등 기부금 모집과 운용을 위한 비용으
로 사용할 수 있다.

제11조(기금운용관) ①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
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고향사랑 기부 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기금출납원: 고향사랑 기부 업무 담당

②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
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
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
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3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영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4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심의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고향사랑 기부 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회계사, 세무사 등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

나.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1명

다. 그 밖에 고향사랑 기금사업 관련 전문가

④ 제3항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

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6조(심의위원장의 직무 등) ① 심의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심의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심의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심의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6항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할 경우 회의록은 심의안건자료 및 서면회의 결과로 대체한다.

⑥ 심의위원회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하게 심의할 필요가 있어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따른 의사정족수의 충족이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심의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서면 심의를 통해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제1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할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
4. 질병, 사망, 회의 장기 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19조(간사)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심의위원회 업무 담당이 된다.

제20조(의견 청취 등) ①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 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의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기관 또는 단체 등에 기금 발전방안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1조(수당 등) 구청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3조(기금의 결산) ① 구청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금결산보고서 제출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덧붙여야 한다.

1. 기금의 운용 성과분석 결과
2.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에 제출하고 의결을 받아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구청장은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 전에 제2조부터 제5조까지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 우선 답례품의 선정, 공급업체의 공모 등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 전에 제12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제22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 이 조례 시행 전에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구성·운영하는 선정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 제2조 및 제12조에 따른 선정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의 행위로 본다.

제3조(기부금 모집·운영 비용에 대한 특례) 구청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기부금의 모집과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에 필요한 비용은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위촉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15조제1항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 부칙 제2조에 따라 구성된 선정위원회 및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위원에 대해서도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임기의 기산일은 이 조례 시행일을 기준으로 하고, 이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인천광역시연수구 공고 제2022-1549호

주식 매각 공개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12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의원의 주식매각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2. 10. 21.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주식 매각 공개목록

소속		직위		직급 등		성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원		의회의원		박정수
본인과의 관계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신탁 여부	매각 또는 신탁 금액(천원)	매각 또는 신탁 일자	매각 또는 신탁 회사
	발행인 (주식명)	주식 수				
박정수	LG에너지솔루션	1	매각	493	2022-09-15	KB증권
배우자	LG에너지솔루션	1	매각	458	2022-08-11	대신증권
배우자	TIGER미국 S&P500	100	매각	1,417	2022-08-19	대신증권
배우자	LG에너지솔루션	3	매각	1,405	2022-09-01	대신증권
배우자	TIGER미국 S&P500	133	매각	1,892	2022-09-15	대신증권
배우자	LG에너지솔루션	2	매각	101	2022-09-19	대신증권
배우자	LG에너지솔루션	1	매각	482	2022-10-12	대신증권
장녀	TIGER미국 S&P500	5	매각	70	2022-08-24	대신증권
장녀	TIGER미국 S&P500	20	매각	277	2022-08-26	대신증권
장녀	LG에너지솔루션	4	매각	1,912	2022-09-06	대신증권
장녀	LG에너지솔루션	2	매각	1,020	2022-09-19	대신증권
장녀	LG에너지솔루션	1	매각	481	2022-10-12	대신증권
장녀	LG에너지솔루션	2	매각	965	2022-10-12	대신증권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22-1550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연수구 물품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10월 21일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1. 자치법규명

- 「인천광역시 연수구 물품관리조례」

2. 개정이유

-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및 구 조직 개편에 따른 물품관리 책임·사무의 위임사항 정비(사업소 추가)
- 한자어 용어 순화 및 문장 정비를 통한 명확한 규정 마련

3. 주요내용

- 가. 구 조직개편에 따른 물품관리 책임·사무 위임사항 정비
(안 제2조제3항, 안 제4조, 안 제8조, 안제21조제1항, 안 제29조 제1항, 안 제33조)
- 나. 한자어 용어 순화 및 문장 정비(안 제22조, 안제22조제1항 및 안 제22조제3항, 안 제23조제1항1호)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 10. 27.(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참조: 재무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3층 재무회계과

○ 연락처 : 전화 032-749-7363, FAX 032-749-7349

○ E-mail : creator23@korea.kr

라. 제출서식

개 정 (안)	사 유(구체적으로)
	(필요시 관련 근거자료 첨부)

5. 참고자료

○ [붙임1] 개정 조례(안)

○ [붙임2]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1】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실·과·소”를 “단·실·과·소”로 한다.

제4조 중 “보건소장”을 “보건소장, 사업소장”으로 한다.

제8조 중 “보건소”를 “보건소, 사업소”로 한다.

제9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각 부서 및 기관의 장이 제8조에 따라 물품매입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8조에 따라 정수책정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 하여야 한다.

제21조제1항 중 “보건소장”을 “보건소장, 사업소장”으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물품의 망실·훼손 보고)”를 “(물품의 분실·훼손 보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중 “망실”을 각각 “분실”로 한다.

제23조제1항제1호 중 “망실”을 “분실”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보건소장”을 “보건소장, 사업소장”으로 한다.

제33조 중 “보건소장”을 “보건소장, 사업소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2】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관리책임) ①·②(생략)	제2조(관리책임) ①·②(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은 효율적인 물품관리에 필요하다면 각 <u>실·과·소</u> 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 ----- <u>단·실·과·소</u> -----.
④(생략)	④(현행과 같음)
제4조(사무의 위임) 구청장은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2조에 따라 소유물품 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의회사무국장, <u>보건소장</u> ,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조(사무의 위임) ----- ----- ----- ----- ----- --, <u>보건소장</u> , <u>사업소장</u> , ----- -----.
제8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물품을 매입, 수리, 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각 부서 및 기관(<u>보건소</u> , 동 행정복지센터 및 의회사무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물품매입·수리·제조품의요구서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	제8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 ----- ----- <u>보건소</u> , <u>사업소</u> , ----- ----- ----- ----- ----- -----.

제9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 ① 각 부서 및 기관의 장이 제8조에 따라 물품매입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8조에 따라 정수책정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 하여야 한다.

제21조(일시보관) ① 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은 물품의 보관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청장 또는 의회사무국장, 보건소장, 동장의 결재를 받아 금고 또는 그 밖에 신용이 확실한 자에게 물품을 일시 보관시킬 수 있다.

② (생략)

제22조(물품의 망실·훼손 보고)

①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사유를 상세히 기입한 경위서

제9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 각 부서 및 기관의 장이 제8조에 따라 물품매입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8조에 따라 정수책정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 하여야 한다.

제21조(일시보관) ① -----

--, 보건소장, 사업소장, ----

-----.

② (현행과 같음)

제22조(물품의 분실·훼손 보고)

① -----
----- 분실 --

를 작성하여 물품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자의 보관품으로서 분임물품출납원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일 때에는 그 분임물품출납원을 경유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사유를 상세히 기입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생략)

제23조(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

① 구청장은 제22조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보관 책임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1. 물품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대품을 납입시키거나 또는 상당한 가액을 변상시킨다.

2. (생략)

② (생략)

-----, -----,

-----.

② (현행과 같음)

③ -----
----- 분실-----

-----.

④ (현행과 같음)

제23조(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

① -----

-----.

1. ----- 분실

-----.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9조(물품검사서) ① 검사원은 제27조 및 제28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물품검사서 를 2통 작성하고 1통을 해당 물 품출납원 또는 입회자에게 교부 하고 다른 1통은 구청장 또는 의회사무국장, <u>보건소장</u> , 동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물품검사서) ① ----- ----- ----- ----- ----- ----- -----, <u>보건소장</u> , <u>사업</u> <u>소장</u>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33조(다른 직원에 의한 인계) 물품출납원이 사망 또는 그 밖 의 사유로 본인이 인계할 수 없 을 때에는 구청장 또는 의회사 무국장, <u>보건소장</u> , 동장이 그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 사람에 게 제32조에 따른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3조(다른 직원에 의한 인계) - ----- ----- ----- -----, <u>보건소장</u> , <u>사업소장</u> , - ----- ----- -----.